

출산·육아휴직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제도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은 '특약'이라 합니다)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상품 중 유효한 계약(이하 '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회사가 업무보고서 상 어린이보험으로 분류한 상품
2. '어린이', '자녀', '아이', '베이비' 등 상품명에 어린이와 관련한 단어를 포함한 보장성 상품

제2조(보험료 할인의 적용대상 및 신청)

- ① 계약자(미성년자인 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할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보험료 할인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로 하며, 이하 같습니다.)가 출산을 하게 된 경우(단, 해당 대상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
 2.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기간 중인 경우
- ② 제1항 제1호의 '출산'은 유산 및 사산은 포함하지 않으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의 보험료 할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하고 있는 해당기간 내에 제1항의 보험료 할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④ 제3항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의 적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 신청 당시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⑤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 대상계약 당 1회에 한하여 제1항의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⑥ 계약자는 회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제1항의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각 신청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 출산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만 해당)
 - 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만 해당)
 2.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상계약의 기본계약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기본계약이 갱신형 상품인 경우, 기본계약 갱신일까지의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포함)
 2. 이미 제1항의 보험료 할인을 신청한 경우
 3. 제1항의 보험료 할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단, 변경 전 계약자가 변경 후 계약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
 4. 대상계약의 기본계약 보험료 납입주기가 일시납인 경우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에 따라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국가공무원법 제26조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등)에 따라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말합니다.

【계약자가 두 명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상계약을 각각 가입한 경우 예시】

- 2026년 7월 1일 첫째자녀 출생, 2029년 12월 1일 둘째자녀 출생 가정

할인 대상	할인 신청 요건			
	첫째 출산	둘째 출산	첫째 육아휴직	둘째 육아휴직
첫째 자녀 대상계약	신청 불가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신청 가능
둘째 자녀 대상계약	미가입	신청 불가	신청 가능	신청 가능

※ 단, 대상계약 당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첫째 자녀의 대상계약을 가입한 후,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 해당 대상계약의 피보험자 출산에 해당하여 **할인신청 불가**
- 첫째 및 둘째 자녀의 대상계약을 각각 가입한 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첫째자녀 계약은 해당 대상계약의 피보험자 출산에 미해당하여 **할인신청 가능**,
둘째자녀 계약은 해당 대상계약의 피보험자 출산에 해당하여 **할인 신청 불가**
- 첫째 및 둘째 자녀의 대상계약을 각각 가입한 후, 계약자(또는 그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중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 계약 모두 **할인 신청 가능**

제3조(보험료 할인의 적용)

- ① 계약자가 제2조(보험료 할인의 적용대상 및 신청)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대상계약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여 드립니다. 할인 금액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 따릅니다.
- ② 제2조(보험료 할인의 적용대상 및 신청) 제6항에서 정한 증빙서류가 접수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날 이후에 납입하는 영업보험료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여 영수합니다.
- ③ 대상계약의 특약 중 납입주기가 일시납인 특약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료 할인의 적용 기간)

제3조(보험료 할인의 적용)에 의해 대상계약에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시점부터 1년(12개월)간 적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상계약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규정을 따릅니다.